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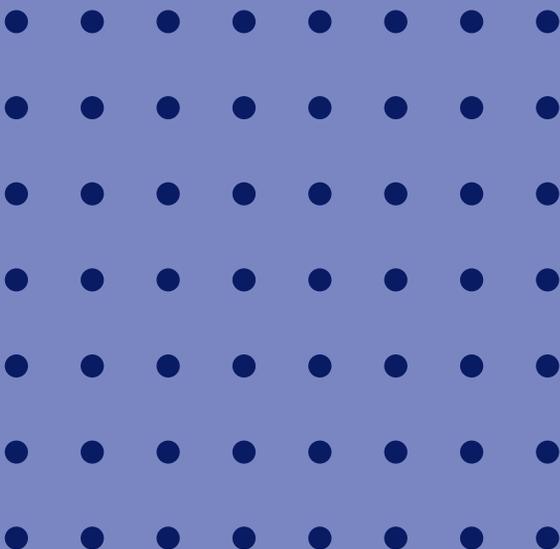
2019 KCA Media Issue & Trend

02

전문가리포트

해외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시 부여된 승인 조건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함의

1. 해외 미디어 시장에서의 인수합병 증가 배경
2. 사후규제체계에서의 승인 조건의 중요성
3. 인수합병 심사 절차와 공익성 심사 기준
 - 3.1. 인수합병 심사절차
 - 3.2. 공익성 심사 기준
4. 인수합병 심사결과 및 승인 조건 사례
 - 4.1. AT&T와 DirecTV
 - 4.2. Charter와 Time Warner Cable, Bright House
 - 4.3. Comcast와 AT&T
5. 정책적 시사점



해외 미디어 기업간 인수합병시 부여된 승인 조건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함의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교수)

요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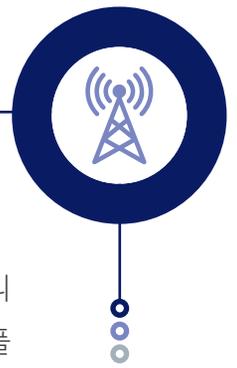
국내의 시장 점유율 사전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주무 부처가 결합 심사를 주도한다. 이들은 공익을 해치고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FCC의 미디어국에서 심사를 담당한 유료방송 사업자 간 수평결합 사례를 선별하여 미디어 기업 간 합병 심사과정과 합병 승인 시 부여된 승인 조건을 살펴보았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 심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주무 부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1. 해외 미디어 시장에서의 인수합병 증가 배경

해외 미디어 시장에서의 기업 결합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를 수직결합하는 사례 (DirecTV와 News Corp, Comcast와 NBCU, AT&T와 Time Warner), 콘텐츠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수평결합하는 사례 (Disney와 21st Century FOX),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간 수평결합하는 사례 (AT&T와 DirecTV, Charter와 TWC)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콘텐츠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것은 물론, 규모를 키우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 사업자 간의 결합도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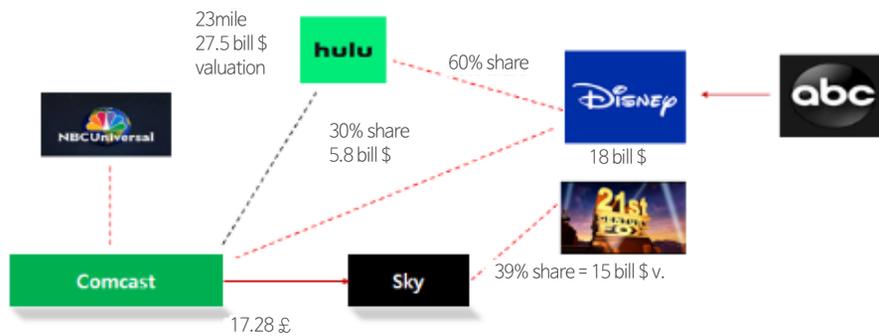
미디어 시장에서의 소유는 더욱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며 허용되는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유





료방송 플랫폼 이외에 인터넷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의 등장 때문이다. 특히 개방형 플랫폼이 미디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미디어 기업 간 결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플랫폼의 증가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를 수직결합하거나 수익률이 감소하는 TV 방송국은 매각하는 대신 신규 정보서비스와 인터넷, 위성방송 플랫폼에 새롭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전범수, 2011; 조영신·최민재, 2014).

그림 1 다채널비디오프로그래밍 유통 시장



Disney가 Hulu에 대한 Comcast의 30% 지분을 확보 (May, 14, 2019)
 Hulu 가입자가 2024년까지 4,000만이 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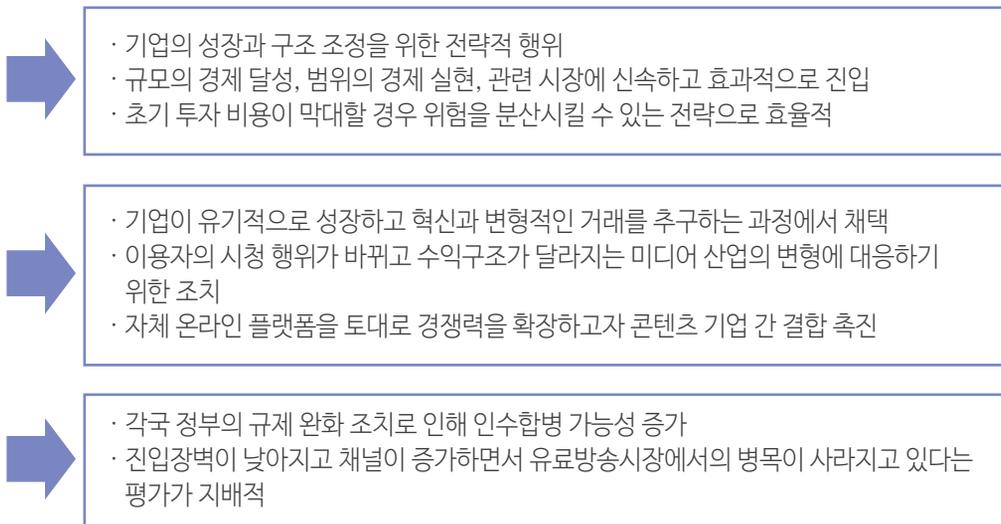
미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은 이러한 추세가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가장 규모가 큰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는 콘텐츠 기업인 Disney가 최대의 화두이다. Disney가 거대 케이블 회사인 Comcast를 물리치고 21st Century FOX를 인수하면서¹⁾ 온라인 플랫폼과 기존 미디어 시장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21st Century FOX를 인수한 데 이어 2019년 Comcast가 가진 Hulu의 지분 30%를 매입하여 총 90%의 지분을 갖게 되면서 Disney는 사실상 가장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이 되었다. OTT의 성장세가 뚜렷한 가운데 지상파 콘텐츠를 유통하는 Hulu 외에 자체적인 OTT 플랫폼 Disney+까지 런칭한다면 콘텐츠 도매 거래에 이어 소비자 접점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 또, broadband를 기반으

1) Disney wins Chinese Approval for Fox Deal, Clearing Major Hurdle, <https://www.nytimes.com/2018/11/19/business/media/disney-fox-china-approval.html?searchResultPosition=8>

로 IPTV를 제공하는 AT&T 역시 Time Warner와의 수직 거래를 마무리한 후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막강한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의 런칭을 앞두고 있다.²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회사 간 인수합병도 진행 중인데, Sprint와 T-Mobile US 역시 합병 신청 후 미 법무부와 FCC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omcast 또한 국경을 넘어 영국 Sky 인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5G 도입을 앞두고 통신사와의 결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³

그림 2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의 증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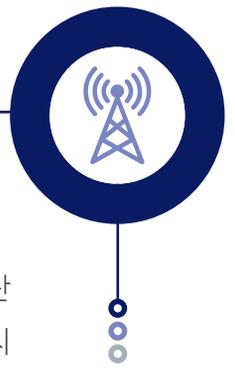


이와 같이 기업 간 인수합병은 여러 전략적 목표를 위해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기업이 성장하고 구조를 조정하는데 기본적인 전략으로 사용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 관계를 확장하는 미디어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 결합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보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결합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관련 시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Gotts, 2000). 특히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반 설비가 존재하고 이에

2) Friends to Leave Netflix for HBO Max, AT&T's New Streaming Service, <https://www.nytimes.com/2019/07/09/business/media/hbo-max-friends-netflix.html?searchResultPosition=1>

3) Wall Street is expecting a two-year pause in big media and telecom deals after a crazy, <https://www.cnn.com/2018/12/09/wall-street-expects-two-year-pause-in-big-media-and-telecom-ma.html>





따르는 비용과 위험이 클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인수합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Goldman, et al., 2003). 다채널 유료방송 역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투자비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등 고정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인수합병이 효율적인 전략으로 채택되곤 한다.

인수합병은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혁신과 변형적인 거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 최근 미디어 시장에서 진행된 일련의 인수합병은 이용자의 시청 행위가 바뀌고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미디어 산업의 변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즉,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은 온라인 기반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의 성장으로 방송 광고 수익이 감소하면서 가입자 이탈을 막고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 크다(Poniachek, 2019). 시장에 다수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다량의 콘텐츠를 보유한 유료방송 사업자를 인수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다(조영신·최민재, 2014). 이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경쟁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콘텐츠 기업 간의 결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⁴

마지막으로 각국의 규제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뀐다는 점도 기업 결합이 촉진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채널이 증가하면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병목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각국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즉 수직결합 사업자의 수직 봉쇄 가능성도 낮아지고, 수평결합을 통해 협상력이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시장 경쟁과 프로그램 다양성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시장 점유율 제한⁵이나 신문사와 방송사 간 교차 소유를 금지하는 사전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⁶ 기업들에게 인수합병의 긍정적 신호가 되고 있다.

4) Disney moves from Behemoth to Colossus with closing of Fox deal. (The New York Times, Mar. 2, 2019), <https://www.nytimes.com/2019/03/20/business/media/walt-disney-21st-century-fox-deal.html?searchResultPosition=7>

5) Comcast Corp. v. FCC, 579 F.3d 1 (D.C. 2009) Opinion for the Court filed by Circuit Judge Ginsburg, in which Circuit Judge Kavanaugh and Senior Judge Randolph concur.

6) 47 C.F.R § 73.3555(d), The local television ownership cap, 47 C.F.R § 73.3555(b), which prohibits ownership of two of the top four television stations in a market - and - The radio subcaps, 47 C.F.R § 73.3555(a), which restrict the number of AM and FM stations a company can own in a single market

2. 사후규제체계에서 승인 조건의 중요성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독점규제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에 근거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심사를 진행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집중도 변화, 진입 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 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경쟁 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공정거래위원회, 2017.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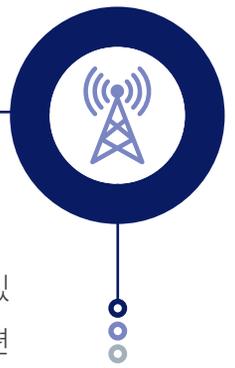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⁷⁾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지만, 특히 미디어 시장의 경우 방송법에 명시된 시장 점유율 규제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방송법상 시장 점유율 규제가 있다는 것은 규제 당국이 시장 집중을 방지하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명확히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에도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진행한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지라도 시장력을 남용하거나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경쟁 제한성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결합을 거부하거나 기업결합 심사 시 승인 조건(merger conditions)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방송법에는 방송 사업자 간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시 심사 기준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방송법 제10조).

사후 규제를 위한 조치로는 방송법 제85조의 2에 근거해 시장 지배력이나 거래 우위에 있는 사업

7)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이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독점규제법 제1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8조)





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경쟁 사업자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가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그러나 현재의 금지행위 규정은 기업결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행위까지 모두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변경허가 심사 기준상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 과기정통부가 경쟁 제한성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심사 기간을 독점하고, 시장 경쟁을 판단하는 심사 기준과 방통위의 중요한 심사 항목인 공익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알려지지 않은 채 심사 절차가 종료된 사례가 있어 향후에 일어날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이성엽, 2017; 정인숙, 2017).

유료방송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해소를 위해 합산규제가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일몰되었고, 현재 사후 보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부처 간 사후 방안의 정책 방향에 다소 차이가 있다.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안에서는 유료방송에 대한 사전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지정하여 시장집중사업자를 규제하는 등 사전 규제를 강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지역성 등 심사 항목을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기업 결합 시 방통위 사전 동의를 신설하는 등 방통위 산하의 기존 법정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⁹

그러나 정교한 논리나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사전 규제(시장집중사업자 지정 및 요금/약관인가)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은 다른 방송 규제 논리와 일관되지 않거나 애초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다른 개념의 시장 집중 사업자로 지정할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논리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통위에서 수행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HHI 지수가 2,168수준으로 경쟁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방통위, 2019)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 시장집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전

8) ZDNet Korea, 2019.5.3. "불확실성 높아진 방송시장, 누가 만들었나", <http://www.zdnet.co.kr/view/?no=20190502160853>

9) 아이뉴스 2019. 5. 20 "과기정통부 vs 방통위...유료방송 규제 엇박자", <http://www.inews24.com/view/1180212>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와 전문인력 보강 없이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제도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 실효성이 없거나 사후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사업자 간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허용하는 대신 사후 규제 체계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규율해온 해외 미디어 시장을 살펴보고, 해당 규제 당국이 결합 기업에 어떠한 승인 조건(merger conditions)을 부과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 법무부의 경쟁 제한성 심사보다는 연방통신위원회(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의 미디어 당국이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기업결합 심사 시 부과한 승인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Comcast의 AT&T 지분 인수(2002), AT&T와 DirecTV의 결합(2015), Charter와 Time Warner Cable, Bright House의 결합(2015) 등 플랫폼 사업자 간 수평 결합을 중심으로 기업결합 심사에서 부과된 승인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된 이후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함의를 얻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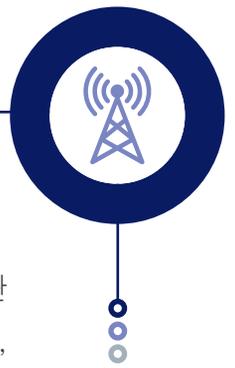
3. 인수합병 심사 절차와 공익성 심사 기준

3-1. 심사 절차

미국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FCC와 법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중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가 합병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시장 내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할 여지가 있는지를 클레이튼법(Clayton Act) 제7조에 근거해서 분석하는 반면, FCC는 커뮤니케이션법 제 214조(a) 및 제310조(d)에 따라 광범위한 공익 심사를 수행한다(Kaplan, 2012). 기업결합을 통해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s benefits)과 이에 대한 침해(public interests harms)를 분석한 뒤에 기업결합을 통해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합병을 승인한다.

미국의 FCC는 독자적인 기준, 절차, 승인 조건 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면서 법무





부와 협의한다. 또한 심사 과정에 합병 기업을 대변하는 의견이나 이에 반대하는 경쟁 기업의 관점, 그리고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점이 특징적이다(정인숙, 2017).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관련 보고서를 포함하여 심사 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외부에서 심사 절차 및 심사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3-2. 심사 기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합병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Farr, 2018). 법무부가 클레이튼법 제7조에 근거해 기업결합을 불허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합병 기업은 이에 대한 타당한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미국 FCC는 법무부와 별도로 공익 심사를 진행하는데, FCC의 공익 심사는 법무부의 경쟁 제한성 심사보다 다소 광범위하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 FCC는 제310조(d)에 근거해 해당 거래가 관련 커뮤니케이션법과 위원회의 여러 규칙에 합당한지 판단하고, 해당 합병이 커뮤니케이션법의 목표를 저해함으로써 공익에 해를 가져오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FCC는 해당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공익에 미치는 해악과 편익을 이익형량하고, 신청 기업은 해당 거래가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기업 결합 심사 시 고려하는 공익(Public Interests)이란 경쟁, 다양성, 지역성, 편의성 등으로 구성되는데, FCC의 공익 심사 기준은 합병 기업이 자발적으로 FCC가 지향하는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안을 이끌어 내는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다(Farr, 2018). 미디어 기업 간 수평 결합에서는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로 살피고, 수직적 결합에서는 다양성과 지역주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조영신, 2007) 최근 사례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FCC의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차별점은 제303조(r)에 근거해 기업결합 심사에서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며, 합병이 성사된 후 발생할 특정한 공익을 확실하게 실현하게 하거나 해악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대부분 합병 신청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조건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FCC의 공익 심사 기준인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Farr, 2018).

하지만 법무부와 FCC의 결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Bell Atlantic과 NYNEX 간 합병에서 법무부는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FCC는 이 합병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합병 심사의 예측불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중 심사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합병 규모와 공공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으로 볼 때 적절하다는 평가도 있다(Weiss & Stern, 1988).

4. 인수합병 심사 결과와 승인 조건 사례

다음에서는 세 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와 FCC에 의해 부과된 승인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AT&T와 DirecTV¹⁰

1) 합병기업의 특성

AT&T는 인터넷, 비디오, 로컬 및 장거리 전화, 모바일 무선 보이스 및 브로드밴드, 그리고 와이파이 서비스 등 IP 기반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DirecTV와의 합

10) In the matter of Applications of AT&T Inc. and DirecTV for Consent to Assign or Transfer Control of Licenses and Authorizations, FCC MB Docket 14-90





병 신청 당시 약 1,450만 가구에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AT&T가 제공하는 IPTV 서비스인 U-verse 가입자의 2/3는 3~4개의 번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AT&T는 높은 프로그램 획득 비용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못하고 초고속 브로드밴드를 확장하지 못한 채 통신 시장의 성장 한계에 직면한 상태였다.

2) 심사 결과

관련 상품 시장은 모든 MVPDs가 제공하는 다채널비디오프로그래밍 시장으로, 지리적 시장은 소비자가 MVPD 서비스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시장으로 규정하였다. 총 74개의 DMA(Designated Market Area) 시장 중 58개는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AT&T의 U-verse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합병 후 허핀달-허쉬만 지수(HHI)가 1,971~7,827 수준에서 거래 후 0.362~3,745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FCC는 합병으로 인해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경쟁 제한적 효과도 있지만 비디오와 브로드밴드 번들 상품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FCC는 두 기업이 모두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MVPD이기 때문에 수평적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FCC는 MVPD 시장 경쟁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 두 기업이 합병 후 상품을 결합하여 출시했을 때의 영향, 그리고 AT&T가 비디오 프로그래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을 살폈다. 먼저 소비자들이 두 기업이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를 밀접한 대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합병 후에 유료방송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다. 즉 AT&T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와 DirecTV의 비디오 서비스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좋은 번들상품을 제공하고 케이블 사업자가 제공하는 브로드밴드와 비디오 서비스의 번들 상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함으로써 MVPD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¹¹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프로그램 구입 비용의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입자당 소비자 잉여는 \$0.0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FCC는 AT&T가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브로드밴드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저소득

11) 비디오가 포함된 번들 상품의 가격이 \$2.74, 단품 PPR 상품 가격도 \$1.38~\$2.20을 인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거래 전 가격에 비해 2.2% 낮은 가격이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broadband 단독 상품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사용량을 기반으로 OVDs(Online Video Distributors)에 데이터 캡(data cap)을 씌우거나 상호접속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등 비제휴 OVDs를 차별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AT&T와 DirecTV 모두 제휴 프로그램과 독점 계약을 맺거나 수직 결합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수직적 경쟁 제한 가능성은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승인 조건

이상과 같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FCC는 합병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승인 조건을 부과하였다.

● FTTP broadband 확대

FCC는 broadband의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디오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Fiber-To-The-Premises(FTTP) broadband의 설치를 확대하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시장에서 합병 이후 경쟁이 감소하는 해악을 경감시키고,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AT&T는 FTTP를 구축하는 지역 내의 모든 E-rate 학교와 도서관(약 6,000개)¹²에 기가바이트 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 비차별적인 사용량 기반 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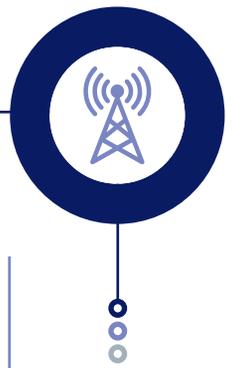
FCC는 AT&T가 broadband 서비스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게 종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 혹은 제휴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우호적인 조건으로 차등 적용하고, 3rd party OVDs가 대안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할 유인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합병 후 유선 broadband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량에 기반한 과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 인터넷 상호접속협정 공개

FCC는 합병 이후 AT&T가 경쟁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와 OVDs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12)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와 도서관





판단하여 합병 이후 4년 동안 상호접속협정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결합기업이 3rd party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제공자와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접근을 통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자 함이다. 이외에 독립적인 측정 전문가를 고용하여 상호접속의 실행 메트릭스를 외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저소득 가입자를 위해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가격 인하

AT&T는 합병을 통해 저렴한 번들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강력한 편익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FCC는 번들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가입자도 있기 때문에 단독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저소득 소비자에게 인화된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 조건 준수 보고원 설치

과거 합병 심사 사례에서 조건부 승인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AT&T는 FCC의 승인 조건을 따르지 않은 선례가 있었다. 이에 FCC는 AT&T로 하여금 별도의 보고원을 설치하고, 승인 조건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 및 보고하도록 하였다.

4-2. Charter와 Time Warner Cable, Bright House¹³

1) 합병기업의 특성

2016년 케이블 업계 4위인 Charter는 Time Warner Cable과 Bright House Networks를 671억 달러에 합병했다. 합병 이후 Charter는 1,700만 비디오 가입자와 1,900만 브로드밴드 가입자를 가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케이블 기업이 되었다. 합병 신청 당시, Charter는 580만 가구에 브로드밴드 인터넷, 음성,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28개 주에서 38만 B2B 고객을 확보

13) 4-2. Charter와 Time Warner Cable, Bright House FCC MB Docket 15-149, In the Matter of Applications of Charter Communications, Inc., Time Warner Cable Inc., and Advance/Newhouse Partnership for Consent to Assign or Transfer Control of Licenses and Authorizations

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약 42만 가구에 MVP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Time Warner Cable(이하 TWC)은 케이블 업계 2위로서 초고속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약 1,170만 가입자, VoIP 약 530만 가구, 케이블 서비스 약 1,080만 가구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더넷(ethernet) 네트워킹, 호스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TWC는 17개 지역의 스포츠 채널과 전국 MLB 네트워크 등 스포츠 네트워크의 지분을 다수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TWC 케이블 뉴스를 제작, 공급하며 온라인 광고를 NCC(National Cable Communications) 미디어를 통해 케이블 회사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및 전국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Bright House에 프로그래밍 수급, 네트워크 관리와 유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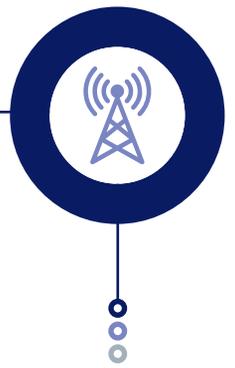
Advance/Newhouse는 Bright House Networks의 모기업으로 비디오, 초고속 서비스, 홈 시큐리티, 음성 서비스를 250만 가구와 사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2백만 가구의 MVP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ight House 역시 콘텐츠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로컬 뉴스와 고교 스포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Discovery Communications가 제공하는 전국 프로그래밍 서비스에 32.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심사 결과

FCC는 케이블 기업 간 수평결합으로 인해 시장 집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정 해악을 없애고 공익의 발생을 확실케 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경우 공익이 더 클 것으로 보았다.

신청 기업은 합병 이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브로드밴드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요금은 저렴해 질 것이며, 과금 설계는 단순해질 것이다. 2)데이터 캡이나 종량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3)케이블 모뎀 렌탈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4)가입자가 다른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 해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5)온라인 비디오 경쟁자의 생존력을 약화시킬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6)Charter의 클라우드 기반 TV 가이드와 수백 개의 실시간 채널을 스트리밍 할 수 있는 TWC의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소비자 이익을 증진





시킬 것이다.

3) 승인 조건

FCC는 신청 기업의 이와 같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합병 이후 시장 경쟁에 해로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1) New Charter의 비디오 서비스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 온라인 OVDs를 대상으로 데이터 캡을 부과하고 종량제에 기반한 과금을 할 수 있다. 2) New Charter의 브로드밴드 가입자가 증가하면 자신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온라인 비디오 유통업자에 부과하는 가격을 인상할 유인과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3) 콘텐츠 기업이 온라인 유통업자에게 콘텐츠 라이선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온라인 비디오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FCC는 다음과 같은 승인 조건을 부과하였다.

● 무료 정산 조건으로 상호접속 이행

FCC는 Charter의 자체 IP 네트워크와 백본 인터넷 제공업자, CDN(Content Delivery Networks)와 서비스 제공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IP 네트워크 간의 상호접속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상호접속을 하고 더 빠른 속도로 트래픽을 증가시키고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데이터 캡과 종량제 미적용

FCC는 합병기업이 온라인 비디오 유통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데이터 캡과 종량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합병 이후 7년 동안 데이터 캡과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종량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 주거지역 개발(residential build-out)

이 조건은 합병기업이 제안한 것으로서 거주 지역에 브로드밴드 시설을 확대해 공익을 증진시키고 유선 브로드밴드 접근 서비스 경쟁을 제고할 것을 약속했다.

● 저렴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FCC는 초고속 브로드밴드를 2백만 이상의 가구에게 제공하고 번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가입자를 위해 단독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 소비자 보유 단말장치를 지속적으로 지원

FCC는 New Charter 가입자들이 셋탑박스나 비제휴 벤더로부터 구매한 내비게이션 장치에서도 케이블 비디오 프로그래밍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보유한 단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는 경쟁 내비게이션 장치 시장을 보장함으로써 가입자들이 New Charter 이외의 케이블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장비를 임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사이버보안 계획 이행

합병 후 세 기업에 산재해있는 운영 체제가 통합되면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FCC는 합병 후 7년 동안 규모가 커진 사이버 보안을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게 하고, New Charter가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방해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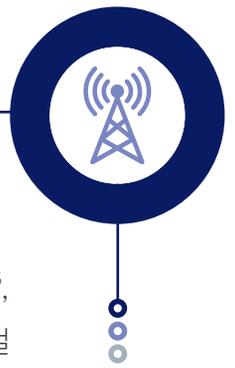
그러나 승인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해악을 없앨 수 없으며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4-2. Comcast와 AT&T¹⁴

2001년 AT&T는 자사의 케이블 TV 비즈니스를 Comcast에 470억 달러에 매각하고자 하였으

14) FCC MB Docket No. 02-70,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In the Matter of Applications for Consent to the Transfer of Control of Licenses from Comcast Corporation and AT&T Corp. Transferors, To AT&T Comcast Corporation, Transferee.





며 합병 신청 당시 AT&T는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 1,850만, 케이블 시스템 가입자 1,313만¹⁵,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50만, 지역 전화 가입자 700만을 확보한 MVPD 사업자였다. 먼저 로컬 방송사, 전국 및 지역 케이블 네트워크와 프리미엄 영화 채널, PPV를 포함한 전통적인 비디오 상품을 제공하였다. AT&T는 Liberty Media의 지분을 매각했으나 1,280만 가입자가 있는 Time Warner Entertainment(이하 TWE) 지분을 보유한 수직결합 사업자였다.¹⁶

당시 Comcast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케이블 사업자였으며 2001년 12월 기준으로 851만 케이블 가입자와 94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4만 1천 지역 전화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Comcast는 전통적인 비디오 상품을 포함하여 지역 방송, 전국 및 지역 단위 케이블 프로그래밍, 프리미엄 영화 채널, PPV(Pay per view)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Comcast의 디지털 방송 가입자는 230만이 있었으며 3백만 가구에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Comcast는 Electronic Program Guide(EPG)를 포함한 상호작용 서비스와 날씨, 스포츠, 트리비아와 같은 프로그램 관련 정보와 양방향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프로그램과 전국 규모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⁷

2) 심사 결과

합병을 통해 Comcast는 약 2,700만 가입자(미국 MVPD 가입자의 약 28.9%)를 확보할 수 있었다. FCC는 해당 합병이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너지와 효율성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았다. 합병으로 인해 브로드밴드 서비스, 케이블 전화의 투자가 가속화되고 지역 프로그램의 공급이 증가하며, 지역 및 전국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FCC는 무엇보다도 FCC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전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15) 50~100%의 지분을 갖는 연대 시스템에서는 13만,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비연대 시스템에서는 525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AT&T의 비연대 케이블 시스템은 케이블, 비디오 프로그래밍, 전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JV, 파트너십에 투자하고 있었다.

16) AT&T가 전국 단위로 유통하는 비디오 프로그래밍 서비스는 E! Entertainment (10%), style (10%), iNDEMAND (44%) 3개이며, Fox Sports New England (50%), New England Cable News (50%), Pittsburgh Cable News Channel (30%), Empire Sports Network, L.P. (33.33%), AT&T3 (100%)의 지역 프로그래밍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17) 4개의 지역 프로그래밍 네트워크인 The Comcast Network, Comcast SportsNet, Comcast SportsNet-MidAtlantic, Comcast Sports Southeast 등의 지역 스포츠 네트워크와 전국적 프로그래밍 네트워크인 QVC (58%), the Discovery Health Channel (20%), E! Entertainment (40%), The Golf Channel (91%), iNDEMAND (11%), The Outdoor Life Network (100%), style (40%), The G4 Network (94%)을 보유하고 소규모 뉴스 프로그램과 공공 프로그램도 제공하였다.

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고, 조건부 승인으로 해당 합병이 공익, 편의, 필수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AT&T가 TWE의 지분을 보유한 수직결합 사업자인 점이 가장 핵심적인 검토 사항이었다. 2001년 12월 AT&T는 TWE에 대한 지분을 신탁에 일임하고, 트러스트 협정 조건에 따라 지분을 매각할 것을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 비켜갈 수 있었다. 즉, TWE가 없는 AT&T-Comcast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질이나 양에 부정적 해를 미칠 만한 협상력을 갖지 못하며, 비제휴 콘텐츠 기업을 봉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에 FCC는 합병 기업이 콘텐츠 기업과 배타적 계약 체결을 제약하는 조건을 따로 부여하지 않았다.

3) 승인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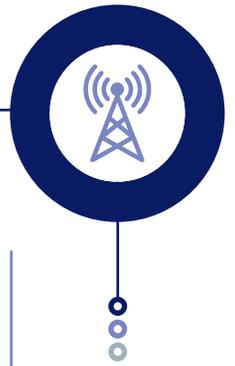
FCC가 합병 기업에 부과한 가장 큰 조건은 TWE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TWE 비디오 프로그래밍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MVPD 가입자 점유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를 통해 합병 기업이 프로그래밍 시장에서 수요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자의 비용을 인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가격 차별화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세이프가드 및 관련된 집행 메커니즘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 TWE와 관련된 세이프가드

FCC는 합병 기업에게 TWE를 5년 반 이내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매각이 이루어지는 동안 TWE의 비디오 프로그래밍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TWE와 관련된 상세한 세이프가드를 따르도록 하였다.¹⁸

21) 즉 AT&T Comcast의 이사는 TWE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TWE의 비디오 프로그램의 경영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할 수 없다. 특히 수탁자에 의해 임명된 TWE의 이사회 멤버는 TWE 케이블 시스템과 관련된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된 의사결정, 비디오 프로그래밍의 전송을 위한 가격/조건 협상, 비디오 프로그램의 롤아웃 스케줄 조정, TWE 비디오 프로그램의 마케팅, 비디오 프로그래밍 운영예산의 책정,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의 선택, 비디오 프로그램 활동 관련 TWE 직원의 고용 및 감독, 비디오 프로그래밍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 일체 활동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합병 기업은 TWE 케이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비디오 프로그램의 전송과 관련된 가격, 조건에 관해 어떠한 정보도 받아서도,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되며 비디오 프로그래밍 벤더로부터 할인을 받지도 우호적인 조건을 받는 것까지 세세하게 열거하였다.





- Texas, Kansas City Cable Partners와 관련된 세이프가드

AT&T가 Kansas City Cable Partners (“KCCP”)와 Texas Cable Partners (“TCP”)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고려하여 TWE와 관련된 보호조치의 내용과 유사한 세이프가드를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즉, 합병기업은 KCCP와 TCP의 케이블 시스템에 전송될 비디오 프로그램 협상 가격 및 조건에 관련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안 되며, 합병 기업의 비디오 프로그램 협상 가격 및 조건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다.

- 세이프가드 준수

FCC는 합병 기업이 세이프가드 준수 과정을 감독하는 담당 직원을 임명하여 준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FCC 미디어국과 진행사항을 협의해 세이프가드 조치 중 실행되지 않은 부분을 즉각적으로 미디어국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합병 후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준수 계획을 제출하고,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6개월 마다 보고하도록 하였다. 담당 직원은 FCC, TWE,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자와 연락하여 세이프가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대외비 사항을 제외하고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5. 마치며 : 정책적 함의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를 통해 미국의 정책 방향과 심사 기준에 따른 인수합병 승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법무부는 합병의 경쟁적 효과에 국한하여 검토하는 반면, FCC는 미래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인수합병 심사를 하고 있다.

세 건의 미디어 기업 간 합병 심사과정과 합병 승인 시 부여된 승인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합병 시기와 합병 규모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CC의 심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악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여 이를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대립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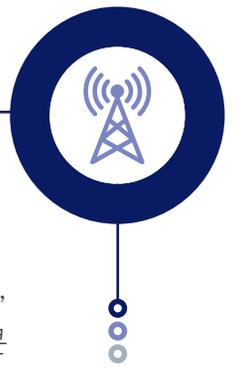
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익에 증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합병을 승인하되, 거래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해악은 조건부 승인으로 완화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청기업은 공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완화하고 FCC는 이를 수용하여 승인 조건으로 전환하고 있다.

둘째, 유료방송 사업자 간 수평결합에서 FCC의 정책적 목표 중 하나인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소비자 복지 증진’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 DSL과 브로드밴드 케이블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케이블 가입자의 대다수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었고,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의 확대와 개방은 FCC의 중요한 규제 정책이 되어 왔다 (Aufderheider, 2002). 이에 따라 FCC는 합병 승인 시 브로드밴드와 비디오의 결합 상품 외에 단품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가격 인하를 일관되게 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다채널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입자를 보호한다. 그리고 결합으로 인해 경쟁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거나 브로드밴드 설비, 지역 및 전국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면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시장 집중이 증가하더라도 효율성의 증대로 네트워크나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공익이 더 크다고 여기는 것이다.

셋째, 심사 시점에서 해당 기업이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합병 이후 증가한 가입자 기반을 토대로 합병 기업이 잠재적으로 반독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 조건으로 포함시켜 시장 경쟁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합병 후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OVDs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온라인 비디오 상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FCC는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가 유료방송 서비스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여겨지는 시점에서, OVDs가 배제되지 않도록 세 건의 심사에서 일관되게 조건을 부여하였다. 또한 수평 결합의 경우 MVPD 시장의 가입자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게 함으로써 합병 기업의 수요 독점력을 방지했다.

넷째, 유료방송 사업자 간 수평결합일지라도 신청 기업이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보유한 수직결합 사업자의 경우 콘텐츠 사업을 매각 혹은 지분 양도를 요구하였다. 커뮤니케이션법 제303조(r)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승인 조건들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잠재적 해악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강도





높은 수준이다. 콘텐츠 사업의 매각은 신청 기업이 합병 신청 시 제안한 것을 토대로 이뤄지지만, 실제 매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세밀하게 열거함으로써 상류 시장에서 합병 기업이 콘텐츠 기업과 우호적인 조건으로 거래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AT&T의 경우 Comcast에 케이블 사업을 넘길 때 TWE 사업을 매각했지만 DirecTV와 합병 이후 다시 TW를 합병했다. Comcast 역시 NBC Universal을 인수하여 콘텐츠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였다. 이렇듯 FCC는 수직결합 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배타 행위의 발생을 예상하여 콘텐츠 사업의 매각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는 타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승인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FCC에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내용과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미디어 기업 간 인수합병 심사에서도 공정위 외에 주무 부처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산업이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의 참여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래 지향적이며 투명하고 구체적인 규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REFERENCES

1. Kaplan, L. (2012). One Merger, Two Agencies : Dual Review in the Breakdown of the AT&T/T-Mobile Merger and a Proposal for Reform, California Law Review, 53, 1571~
2. Ponjachek, H. A. (2019) Mergers & Acquisition : A Practitioner's Guide to Successful Deals,
3. Weiss, J. R. & Stern, M. L. (1998) Serving Two Masters : The Dual Jurisdiction of The FCC and the Justice Department over Telecommunications Transactions, Communication Law Conspectus, 6, 195~
4. 미디어스, 2019.4.23. 과방위 민주당이 제안한 유료방송 사후 규제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009>.
5. ZDNet Korea, 2019.5.3. “불확실성 높아진 방송시장, 누가 만들었나”, <http://www.zdnet.co.kr/view/? no= 20190502160853>
6. 아이뉴스 2019. 5. 20 “과기정통부 vs 방통위...유료방송 규제 엇박자”, <http://www.inews24.com/view/1180212>
7. Disney wins Chinese Approval for Fox Deal, Clearing Major Hurdle, <https://www.nytimes.com/2018/11/19/business/media/disney-fox-china-approval.html? searchResultPosition=8>
8. Friends to Leave Netflix for HBO Max, AT&T's NEw Streaming Service, <https://www.nytimes.com/2019/07/09/business/media/hbo-max-friends-netflix.html? searchResultPosition=1>
9. Wall Street is expecting a two-year pause in big media and telecom deals after a crazy,
10. <https://www.cnbc.com/2018/12/09/wall-street-expects-two-year-pause-in-big-media-and-telecom-ma.html>